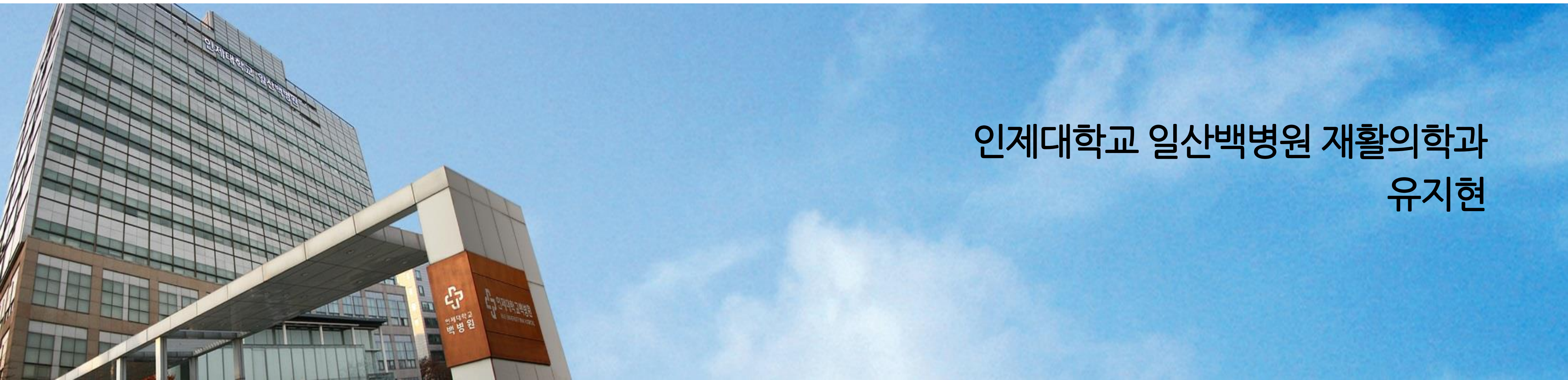


이학요법료의 개요 및 1절, 2절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요

2. 이학요법료 개요

3. 1절 기본물리치료료

4. 2절 단순재활치료료



내가 먹는 약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 약국비용 계산기

의약품정보

- 의약품통합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자료공개

심사평가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동향

건강정보

- 생활속 건강정보
- 통계로 보는 질병정보
-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간행물

- **HIRA e-Book**
- 통계자료실

지역의료정보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 의료이용지도



전체	간행물·발간물	연구·보고서	요양급여·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영문	기타	Hira 사보(건가사)
----	---------	--------	-----------	-------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2021-10-07 11:02:36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2021-10-07 10:51:42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급여조사실 조사1부]
2021-09-10 10:50:12



사례로 보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QI 활동 1부
[평가실 평가관리부]
2021-05-28 14:03:54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
이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2021-04-21 08:59:11



2021년 2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용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2021-03-11 15:28:53



질병군(DRG) 포괄수가 제도 요양급
여비용 및 실무 안내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2021-02-25 09:32:12



2020 의료급여 실무편람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2020-12-10 17:32:24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 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101	MM010	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	9.20
	MM015	주 : 1.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2. 같은날 「사-102」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사-101-1		한냉치료 Cold Therapy	
		주 : 1. 한냉치료와 온열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2. 장비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MM011	가. 콜드팩 Cold Pack	9.98
	MM012	나. 냉동치료 Cryotherapy	14.38
사-102	MM020	심층열치료 [1일당] Deep Heat Therapy	13.11
		주 :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사-103	MM030	자외선치료 [1일당] UV Ray Irradiation	5.51
사-104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40.83
	MM080	주 : 간섭파전류치료(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발 간 등 록 번 호
G000CU7-2021-2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1년 2월판

건강보험수가

건강보험수가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X 종별가산 (원단위는 절사 또는 반올림)

2021년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 77.3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87.6원 (의원)

종별가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예)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상대가치점수 151.13

- 1) 상급종합병원: $151.13(\text{점수}) \times 77.3(\text{환산지수}) \times 1.3(\text{종별가산}) = 15,190\text{원}$
- 2) 종합병원: $151.13(\text{점수}) \times 77.3(\text{환산지수}) \times 1.25(\text{종별가산}) = 14,600\text{원}$
- 3) 요양병원, 병원: $151.13(\text{점수}) \times 77.3(\text{환산지수}) \times 1.2(\text{종별가산}) = 14,020\text{원}$

예)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상대가치점수 77.92

- 1) 상급종합병원: $77.92(\text{점수}) \times 77.3(\text{환산지수}) \times 1.3(\text{종별가산}) = 7,830\text{원}$
- 2) 종합병원: $77.92(\text{점수}) \times 77.3(\text{환산지수}) \times 1.25(\text{종별가산}) = 7,530\text{원}$
- 3) 요양병원, 병원: $77.92(\text{점수}) \times 77.3(\text{환산지수}) \times 1.2(\text{종별가산}) = 7,230\text{원}$
- 3) 의원: $77.92(\text{점수}) \times 87.6(\text{환산지수}) \times 1.15(\text{종별가산}) = 7,850\text{원}$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

1년마다 발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에서 확인 가능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7.3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7.6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9.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0.3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회귀의약품센터	90.9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6.1원

부 칙 (2000. 12. 28.)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6.)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3.)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요

2. 이학요법료 개요

3. 1절 기본물리치료료

4. 2절 단순재활치료료

제7장 이학요법
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 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 표층열치료
- 심층열치료 [1일당]
- 한냉치료
- 자외선치료 [1일당]
-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ICT
- 마사지치료 [1일당]
- 단순운동치료 [1일당]

제7장 이학요법 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 파라핀욕 [1일당]
- 수치료 [1일당]: 대조욕, 회전욕치료 등
- 유속치료 [1일당]
- 간헐적 견인치료
- 전기자극치료
-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 운동치료 [1일당]: 복합/등속성
-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 압박치료 [1일당]
-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 이온삼투요법 [1일당]
- Iontophoresis

제7장 이학요법 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풀치료 [1일당]
-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 작업치료: 단순/복합/특수
-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재활기능치료: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
-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연하장애재활치료
-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 재활사회사업
- 호흡재활치료 [1일당]

제7장 이학요법 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적외선치료 [1일당]
- 자외선치료 [1일당]
- 간헐적호흡치료 [1일당]
- 양위 양압호흡치료 [1일당]
- 수압팽창술
- 신경인성 장훈련 치료 [1일당]
- 고빈도 흉벽진동요법 [1일당]
-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1일당]: 폐질환 운동재활치료/호흡근부전 재활치료
- 심장재활: 심장재활교육/평가/치료
- 기립경사훈련 [1일당]
- 분사신장치료 [1일당]

‘주’ 사항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127	MM131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77.92
	MM132	주 : 1.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동시에 2 이상의 동통유발점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122.74점을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05	MM090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주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유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기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52.99
사-106	MM101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주 : 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 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58.46

수가 산정이 가능한 시설, 인력조건

1일 산정 가능 횟수

수가 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내용

동시 산정에 대한 조건 등

[1일당]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사-124	MM11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51.13
사-116	MM102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주 : 「가」, 「나」 및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가. 복합운동치료 Complex 주 : 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91.49

1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일당] 수가는 1일 1회만 산정 가능함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요

2. 이학요법료 개요

3. 1절 기본물리치료료

4. 2절 단순재활치료료

제7장 이학요법 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 표층열치료
- 심층열치료 [1일당]
- 한냉치료
- 자외선치료 [1일당]
-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ICT
- 마사지치료 [1일당]
- 단순운동치료 [1일당]

1절 기본물리치료료

-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 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TENS, ICT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 그 외 1절치료는 [1일당] 수가
- 표층열치료 + 심층열치료
 - 표층열치료는 50%만 산정
- 한냉치료 + 온열치료
 - 한 가지만 산정
- TENS + 재활저출력레이저
 - 주된 물리치료는 요양급여, 그 외 1종은 전액 환자 부담

1절 기본물리치료료

- 단순운동치료
 - 2절의 복합 또는 등속성 운동치료 또는 3절의 재활기능치료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 동시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만 산정
 - 요부질환의 운동교육은 초진에 한하여 1~2회 인정
 - Ramsay-Hunt SD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에서 시행한 운동치료는 단순운동치료로 산정 가능

- 물리치료 + 국소주사 (관절강내, 신경간내, 신경차단술 등)
 -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 나머지는 전액 본인 부담
- 표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 +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 별도산정 불가
- TENS, ICT, 심층열치료 +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 입원진료: 소정금액 각각 산정
 - 외래 진료: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 환자 부담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요

2. 이학요법료 개요

3. 1절 기본물리치료료

4. 2절 단순재활치료료

제7장 이학요법 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 파라핀욕 [1일당]
- 수치료 [1일당]: 대조욕, 회전욕치료 등
- 유속치료 [1일당]
- 간헐적 견인치료
- 전기자극치료
-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 운동치료 [1일당]: 복합/등속성
-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 압박치료 [1일당]
-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 이온삼투요법 [1일당]

2절 단순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
-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는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만 산정 (그 외 2절치료는 [1일당] 수가)

- 운동치료 (복합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 1절의 단순운동치료 또는 3절의 재활기능치료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 동시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만** 산정
 -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
 - 사경에 실시한 복합운동치료 인정

2절 단순재활치료료

- 복합림프물리치료
 - 1차성 또는 2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 최대 4주 이내로 인정
 - 양측 둘레차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양측 부피차이가 10% 또는 200ml 이상인 경우/림프신티그라피, 초음파 등에서 림프계 기능부전에 의한 부종이 확인된 경우 주 2~3회 추가 가능

- 이온삼투요법
 -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인정
 - 주 1~2회 간격, 4주 실시
 -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최대 4주 추가실시 가능
- 이온삼투요법 + 다른 물리치료
 -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 적용,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 전액본인부담



공동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등록

공동인증센터

폐업기관로그인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청구방법
급여기준



e-평가시스템



의료자원
급여기준



심사평가정보 &
진료의뢰회송



시험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

- 주제별 분석심사 안내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신청 및 시작
- DUR제도안내
- 요양기관업무포털 이용안내

실시간 자주찾는 메뉴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자보알림방

+

- [요양병원]고시 제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2021-10-07
- 2021-4차 구입약가 정기확인 확정단가 안내 2021-10-06
-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1년 10월) 2021-10-06
- 「심사지침」 신설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3호 2021-10-06
- 2021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승인 및 2021-10-01

1 2 3 4 5

< ||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진 의사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신청방법 :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
- 파견의료인력 신청서 작성 시 희망기관유형을
"예방접종센터" 선택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044-202-1835

통합검색

통합검색

전체단순운동치료

상세검색초기화

☐ 결과내 재검색

심사기준 종합서비스(17)

심사기준(9)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0)

추가정보(7)

행위정의(1)

약가정보(0)

치료재료대정보(0)

급여비급여목록정보(0)

치료재료목록파일(0)

공지사항(0)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0)

요양기관현지조사(0)

검색범위

☒ 전체

☒ 제목

☒ 본문

☒ 첨부

☒ 작성자

검색기간

1주1개월1년

시작일

- -

종료일

- -

심사기준

검색결과 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2018.12.07] 단순운동치료[1일당](사106)

...간섭파전류치료[1×1×1 ▶ 조정 사106 단순운동치료[1일당] 1×1×1 ▶ 조정 □ 심사결과 ○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 등 상병에 청구한 단순운동치료[1일당] 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인정할 만한 관련 상병, 진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심사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 [2018.09.27] [고시 제2018-206호(행위)]심장재활 급여기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심장재활치료를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마. 새로운 심장재활의 적응증이 발생하여 심장재활이 필요한 경우 심장재활 평가·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단, 심장재활교육은 산정 불가함.

» [2017.04.12] [고시 제2017-68호(행위)]심장재활 급여기준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마. 새로운 심장재활의 적응증이 발생하여 심장재활이 필요한 경우 심장재활 평가·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단, 심장재활교육은 산정 불가함. ☞ 신설사유 : '4대 중증질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검색결과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추가정보

검색결과 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2021.01.01] [IM101-회복기재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I -단순운동치료

급여구분 : 급여, 단가(의원) : 0, 단가(병원) : 4520, 단가(치과병의원) : 5190, 단가(보건기관) : 0, 단가(조산원) : 0, 단가(한방병원) : 5250, 수술여부 : 비수술, 상대가

닫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